

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「부동산중개업법」 제37조의3(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에 따라 평창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,
- 「부동산중개업법」이 2005.7.29.자로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 되면서,
-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,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4. 3. 19 ~ 4. 8) : 제출 의견 없음
- 2) 사전 규제검토 : 해당사항 없음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종합민원과장 장하진
연락처	(033) 330 - 2320